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간토대지진조선인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5.12.3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청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 간사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다. 희생자·유족의 신청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

라. 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안 제11조)

-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 결정

마.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14조)

- 위원회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의결사항)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이하 “각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상규명및보고서작성소위원회
2. 희생자및유족심의소위원회
3. 명예회복및기억계승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

위원회에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① 법 제14조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의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직접 전해 들은 사람
3.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확인한 사람

제7조(진상규명을 위한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상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말로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개시 또는 각하결정 이전까지 서면 또는 말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인이 말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하여 신문·방송·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의 절차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청) ①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희생자·유족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희생자·유족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

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2. 유족 신청만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유족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가목의 서류

나. 제1호나목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법 시행일부터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
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희생자 신
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이송 및 통지) 위원회는 신청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소
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
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신청) 위원회는 각하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각하의 사유를 보
완한 후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상규명 신청서

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상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진상규명 조사방법) 위원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결정의 유형) 위원회의 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결정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이 된 경우
2. 진상규명불능결정: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제14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이의신청 내용 또는 절차에 보정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20조제3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고서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과 피해 상황
2. 희생자와 피해의 내용
3.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희생자 및 그 유족과 관련 단체의 노력 및 그 성과
4. 진상규명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간토 대지진 조선인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그 원인
5. 진상규명을 위하여 동원된 조사방법, 조사문헌 및 조사지역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보고서 및 종합보고서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진상규명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3쪽 중 1쪽)

사건번호		접수기관		접수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 희생자 [] 유족·친족 [] 경험·목격자 [] 기타()				
사건 관련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희생자					
발생일시 (시기)					
발생장소 (지역)					
증거자료	자료명		내용		
신청의 취지					

사건의 내용	
그 밖의 사항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 난은 신고인이 구술로 진상규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직

(서명 또는 인)

진상규명신청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의 “사건과의 관계”란은 진상규명 대상 사건과 신고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2. “주소”란은 신고인의 현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사건관련자”란은 신고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필요시 별지 작성)
4. “사건관련 기관”,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조사 여부”란은 신고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신고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고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 유족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고사유	[] 사망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 2명 이상일 경우 별지 제3호서식(3쪽 중 제2쪽)을 사용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유족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2.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1)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3)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희생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고	[]사망	년	월	일	사망
사유	[]행방불명	년	월	일경	행방불명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사망(행방불명) 경위		※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희생자의 유족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희생 유형	희생자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유족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의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의 유족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1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2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위임자 3	(서명 또는 인)	법정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희생자의 유족 명단					
성명 (한자)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		의			

이의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희생자	성명[한글/한자]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진상규명 신청 각하 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426